

모두의 학교를 위한 ‘학교문화 책임규약’

[책임규약의 목적]

- 모두의 학교를 위한 ‘학교문화 책임규약’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,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모두의 학교를 위한 ‘학교문화 책임규약’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,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.

[학교폭력 이해도 제고]

- 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(인권, 교육기본권)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

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

- 제2조(정의) 1.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 심부름,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
-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,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.

[참고] 교내외 신고 방법

- 교내 신고: 구두 신고(교사에 직접), 설문조사, 이메일, 휴대전화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방법 활용
- 교외 신고: 112 경찰청,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,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

[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]

-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)

[참고] 가해학생 조치 사항

구분	가해학생 조치 사항
1호	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2호	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
3호	학교에서의 봉사
4호	사회봉사
5호	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6호	출석정지
7호	학급교체
8호	전학
9호	퇴학(고등학교만 해당)

-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,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.
-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,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,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,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,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

[참고] 가해학생 부과 가능한 긴급조치

-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5호+제6호(동시 부과 가능) ※ 7호 포함(법령 개정 추진 중)